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3번

(2009년 4월 21일 채택)

협정 부속서 III 개정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

공동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에 관한 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부속서 III의 HS 구조에서의 조정을 요구함에 주목하고,

당사국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이 협정상 관련 상품의 특혜대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며,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 부속서III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 협정 제8.1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협정 부속서 III은 이 결정의 부속서로 대체된다.
2. 이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자신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사무처에 통보한 이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사무처에 기탁한다.

부속서 Ⅲ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

HS 세번	상품 설명	다음 국가로 수입될 경우 제외
28.52	무기 또는 유기 수산화합물(아말감을 제외한다)	
ex 2852.00	알부민의 것(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수은을 포함한 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난백과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ex 2852.00	수은을 포함한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수은을 포함한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의 것(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수은을 포함한 하이드과우더(크롬 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대한민국
29.05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기타 다가알콜	
2905.43	-- 만니톨	대한민국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대한민국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앵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에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에큐어스솔루션	
ex 3301.90	- 기타, 인삼(백삼, 홍삼 및 기타 인삼)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	대한민국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3502.11	- 난백 -- 건조한 것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2.19	-- 기타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2.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노르웨이
3502.90	- 기타	대한민국 노르웨이

HS 세번	상품 설명	다음 국가로 수입될 경우 제외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대한민국
3504.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 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대한민국
35.05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10	-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5.20	- 글루	대한민국
ex 3505.20	- 글루, 동물사료용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8.09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809.10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대한민국
ex 3809.10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동물사료용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ex 3823.11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스테아르산,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ex 3823.12	-- 올레산,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ex 3823.13	-- 톨유 지방산,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ex 3823.19	-- 기타,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ex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 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60	- 소호 2905.44의 것을 제외한 소르비톨	대한민국